

<출석인정 관련 규정>

우송정보대학 학칙

제25조의7(출석의무) 학생은 수강신청한 전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8.7.>

제25조의8(출석인정 및 학습권 보장) ① 학생의 질병검사, 예비군 동원·훈련, 상고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<신설 2023.8.7.>

② 총장은 제1항의 질병검사, 예비군 동원·훈련 등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업 보충 등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8.7.>

③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신설 2023.8.7.>

교무규정

제28조(출석) 학생은 수강 과목별로 3분의2 이상을 출석하여야 해당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7.8.1., 2023.1.16.>

제29조(출석인정)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증명서류가 첨부된 결석계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.

①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.

1. 애경사 <개정 2023.9.11.>

부모 사망	6일	본인 결혼	5일
조부모 사망	3일	부모 회갑	1일
형제자매 사망	3일	형제자매 결혼	1일

2. 질병검사 : 2일 이내 <개정 2023.9.11.>

3. 예비군 동원·훈련 : 소집기간과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 <신설 2023.9.11.>

② 총장이 허가한 공적인 행사 참여시는 행사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. 다만, 간호학과 임상실습의 경우 실습기간 중에 속한 법정 공휴일 등에 대하여는 출석으로 인정한다. <개정 2023.9.11., 2024.8.26.>